



-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2. 11.



이 영 빈 의원

제안 설명서

제안자: 이영빈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추진력 확보와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 환경 디자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2년 11월 4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추진력 확보와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이며,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 환경 디자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922054
----------	----------

발의일자: 2022. 11. 4.

발 의 자: 이영빈, 박정환, 남현주, 서보영,
김장관, 정순옥, 박종길, 김정희,
고명옥, 서민우, 이선주, 김기열

1. 개정이유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추진력 확보와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 환경 디자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 나. 시행계획의 수립,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 다.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 라. 위원회의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9조)
- 마.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 1) 「지방자치법」 제12조~제13조
- 2)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4조
- 3)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서 제6조를 각각 제5조에서 제7조로 하고 제7조를 제9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으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 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삭제하고

제9조(중전의 제7조) 제1항제1호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조의2”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안전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범죄예방 환경개선 및 안전마을 조성 등의 사업
3.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도시디자인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5. 취약계층(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지원 등

제8조에서 제11조를 각각 제10조에서 제13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달서구 관할 경찰서, 관할 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 <u>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신 설></p> <p>4. (생략)</p> <p>② (생략)</p> <p><신 설></p>	<p>제4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u>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은 <u>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 <u>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u></p>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p> <p>① <u>구청장</u>-----</p> <p>-----</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u></p>

<신 설>

제5조·제6조 (생 략)

제6조의2(방법시설 설치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법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7조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제6조의2에 따른 방법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7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

<삭 제>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

1. 제5조-----

2. 제6조-----

3. (현행과 같음)
4. 제8조-----

5.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달서구 관할 경찰서, 관할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및 안전마을 조성 등의 사업
3.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도시디자인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5. 취약계층(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지원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달서구 관할 경찰서, 관할 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 제11조 (생략)

제11조 ~ 제13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 및 도시공간의 디자인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공공의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조경 식재를 비롯한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담장, 조경시설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적영역을 제외한 공공의 도시공간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의 휴게시설, 근린상가 등을 배치하여, 주민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한다.
5. 조성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유지·관리로 범죄예방의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공공기관, 구·군 및 기업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관법」에 따른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추진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기본계획의 수립을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때에는 그 경관계획의 실행계획과 단계별 사업계획에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지방검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계획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보(이하 “공보” 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달서구” 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달서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달서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사업
5. 방범시설 설치지원 등 침입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방범시설 설치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7조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6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달서구 건축위원회가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달서구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달서구 관할 경찰서, 관할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및 범죄환경 개선 지역을 선정하여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